

서울특별시의회
제333회 정례회
도시계획균형위원회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182호)

제 안 설 명



2025. 11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상욱
(국민의힘 비례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!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욱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현재 서울은 기존 공연장의 개보수 및 타용도 활용으로 수만 명 규모의 대중음악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상 없습니다. 이로 인해 해외 아티스트 공연 무산, 국내 대형공연 해외 이전, 암표 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현행 조례는 제2·3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연장 바닥면적을 각각 2천 m^2 , 3천 m^2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.
- 이에 본 개정안은 제2종은 4천 m^2 , 제3종은 5천 m^2 로 완화하고, 시장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구역에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 인프라 확충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고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